

#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1/2

심의일자	2018.1.23.(화)		
사업명/신청위치	대치쌍용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/ 강나구 대치동 66번지 일대		
의결번호	2018-02-1	심의결과	원안의결
<b>[심의 내용] 건축</b>			
■ 제출한 안에 대하여 원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.			
■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			
<b>&lt; 건축분야 &gt;</b>			
○ 공동주택 의무기준과 권장기준의 적용 및 공공기여 등을 감안하여 '우수디자인 공동주택'으로 인정함. - 영동대로 가로활성화(복합문화가로 조성), 남부순환로 가로 활성화(가로경관 및 보행환경개선), 대치교 보도 확장 및 상징성 강화 사업의 계획, 시행, 준공 등은 인허가권자와 협의·검토·확인 하는 등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.			
○ 지속가능형건축구조(무량판구조)로 인정하되, 개략적인 심의도서로 심의한 것이므로 인허가 전에 세부적인 계획에 대하여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-456호(2007.11.1.)의 평가기준에 적합하게 사업승인도서가 작성되었는지를 검토·확인 하여 적용하기 바람.			
○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 완화신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어린이집(598.00m <sup>2</sup> ), 경로당(407.77m <sup>2</sup> )의 면적에 대하여 용적률 완화 인정함.			
○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신청은 우수디자인 항목을 적용하여 30% 완화 인정함.			
<b>&lt; 공통사항 &gt;</b>			
1.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 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. 가. 녹색건축물 인증 : 우수(그린2)등급 이상 나.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: 주거1등급, 비주거 1등급 적용, 다.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률 주거 3%, 비주거 7% 적용			
- 계속 -			

2018.1.23.  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

#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2/2

심의일자	2018.1.23.(화)		
사업명/신청위치	대치쌍용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/ 강나구 대치동 66번지 일대		
의결번호	2018-02-1	심의결과	원안의결
[심의 내용] 건축 〈 공통사항 〉(계속) 라.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 - 공동주택 1차 에너지소요량 142.78kWh/m <sup>2</sup> ·y (기준150kWh/m <sup>2</sup> ·y) - 부대시설 1차 에너지소요량 207.52kWh/m <sup>2</sup> ·y (기준240kWh/m <sup>2</sup> ·y) - 근린생활시설 1차 에너지소요량 248.13kWh/m <sup>2</sup> ·y (기준320kWh/m <sup>2</sup> ·y) 2.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, 급·배기구,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(SKY VIEW)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외관을 마감하시기 바람. 3. 수돗물 재처리시설(중앙정수처리장치) 설치·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, CO <sub>2</sub>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“불필요한 시설”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. 4.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(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). 1) 대지면적 1,000m <sup>2</sup> 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,500m <sup>2</sup> 이상의 건축물. 2)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‘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’을 참고하여 적용. 5. 『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』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설계·시공하기 바람.			

2018.1.23.  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